

협력사 행동강령



Everyday Everywhere EcoPro

서 문

에코프로비엠은 새로운 에너지 및 환경 기술 개발로 인류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편리하게 한다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인권 보호와 존중이라는 원칙하에 환경 보호, 지역사회의 건강과 복지 향상 등 인류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기업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GPs, 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에 근간을 두고, UN 세계 인권 선언(UDHR,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에서 채택된 작업장에서의 기본원칙 및 권리에 관한 선언(ILO Declar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및 기타 국제 표준 행동 강령을 참고하여 공급망에 적용할 수 있도록 협력사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고 함)을 제정하였습니다.

협력사 행동강령의 목적

이 강령은 우리의 공급업체 및 비즈니스 파트너가 인권과 환경을 보호하고 책임 있는 업무 수행을 하기 위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 강령은 인권, 안전, 보건, 환경, 책임 있는 재료(광물) 조달 및 합법적이고 윤리적인 업무 수행이라는 원칙과 관련하여 우리와 거래할 때 준수가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바, 우리와 거래하는 모든 공급업체에 적용되며 모든 공급업체는 이 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모든 에코프로비엠의 공급업체는 다음을 준수해야 합니다.

- 본 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합니다.
- 법규위반 관련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보완 조치하고, 진행상황을 투명하게 공지합니다.
- 적절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 이 강령과 유사한 규정을 시행하고, 하위 공급망도 동일하게 수행하도록 요구합니다.

에코프로비엠은 본 강령을 준수하는 공급업체를 식별하고,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 할 수 있으며, 공급업체는 이를 위해 협조하여야 합니다.

1. 인권보호 및 존중

공급업체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며 능력과 업적에 따라 공정하게 대우하고, 다음을 준수합니다. 이 기준은 임시 근로자, 아주 근로자, 학생 근로자, 계약 근로자, 직접 고용 근로자 등 모든 형태의 근로자에게(이하 "근로자"라고 함) 적용됩니다.

1.1. 어떤 형태로든 강제 노동을 사용하거나 용납하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가혹한 징계도 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는 공급업체가 인신매매를 이용하고 지원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공급업체는 다음을 준수해야 합니다.

- 1) 노동 제공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합당한 통지를 함으로써 자유롭게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어야 합니다.
- 2) 인신구속계약 또는 인신매매에 따른 근로자를 고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 3) 근로자의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아야 합니다.
- 4)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잔인하거나 비인간적이며 경멸적인 대우를 하지 않습니다.

1.2. 윤리적 채용 관행을 따르며, 공급업체는 다음을 준수해야 합니다.

- 1) 근로조건에 대해 지원자를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 2) 직원들에게 취업 수수료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 3) 직원의 여권 및 기타 정부발행 신분 증명서의 양도를 요구하거나, 압수, 파기, 은폐해서는 안 됩니다.
- 4) 직원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근로조건을 문서화하고 전달해야 합니다.

1.3. 어떤 형태로든 아동 노동을 이용하지 않으며, 공급업체는 다음을 준수해야 합니다.

- 1) 사업장 소재지 법령(이하 "현지 법령"이라 함)에서 규정한 최소 고용 연령을 준수해야 하며, 현지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도 15세 미만의 고용을 금지합니다. 근로자에게 도움이 되는 정부가 승인한 직업 훈련 또는 견습 프로그램은 예외입니다.
- 2) 18세 미만의 근로자가 야간 근무, 초과 근무 또는 위험한 작업을 포함하여 건강이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3) 교육 담당자에 대한 실사를 수행하고 적절한 학생 작업 기록을 유지하며 학생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학생근로자를 관리합니다.

1.4. 초과 근무를 포함해서 근로 시간에 대한 현지 법령을 준수하고,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정한 보상 및 혜택을 제공합니다. 공급업체는 다음을 준수해야 합니다.

- 1) 모든 초과 근무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작업 일정과 초과 근무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최대 시간 및 휴식 시간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2) 초과 근무에 대해 사전에 합의하고, 현지 법령을 준수하여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하거나 휴가를 사용하는 것을 보장해야 합니다.
- 3) 징계 조치의 수단으로 정당한 이유 없는 임금삭감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4) 근로자의 임금 지급 기준 및 항목은 급여명세서, 급여 지급 내역이 기록된 서면 또는 전자적인 방법 등을 통해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1.5. 직장 내 괴롭힘이나 불법적인 차별을 없애기 위해 노력합니다.

- 1) 국적, 출신지, 학연, 혈연, 종교, 나이, 성별, 혼인, 임신, 출산, 장애,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또는 현지 법령에 저촉되는 기타 요인을 사유로 직장 내 괴롭힘이나 차별을 해서는 안 됩니다.
- 2) 다양성을 지원하고, 양성 평등을 촉진하며, 고용 관계는 균등한 기회 원칙을 기반으로 합니다.
- 3) 근로자의 종교 활동을 위해 합리적인 편의 시설을 제공해야 합니다.

1.6.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에 대한 근로자의 권리를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 1) 공인된 근로자 대표가 있는 경우, 직원들의 이익 증진을 위해 직원 대표와 협력합니다.
- 2) 공인된 근로자 대표가 없는 경우에도 위협, 괴롭힘, 보복 또는 폭력에 대한 두려움 없이 경영진 및 외부 이해관계자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2. 안전보건

2.1. 건강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제공하며, 공급업체는 다음을 준수해야 합니다.

- 1) 지역 및 국가의 안전, 건강 및 화재 안전 법규를 충족하는 작업 환경을 제공합니다.
- 2) 근로자가 주로 사용하는 언어를 사용하여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절한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사업장 내 안전보건 관련 정보는 눈에 잘 띠는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
- 3) 정기적인 위험 평가를 수행하고, 기계적, 전기적, 화학적, 화재 및 물리적 위험을 비롯하여 작업장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정 및 예방 조치를 시행합니다.
- 4) 근로자에게 정기적인 건강 및 안전 교육을 제공하고 근로자에게 개인 보호 장비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 5) 수유 중인 근로자를 고위험 작업 환경에 배치하지 않고, 작업장 내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을 제거하거나 줄이고, 편의 시설을 제공하는 등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6) 모든 작업장에는 효과적인 화재 안전 관리 시스템 및 비상 계획을 갖추어야 합니다. 관련 법령과 안전 관행에 맞춰 충분한 비상구와 대피 경로를 제공하여 근로자와 방문자를 보호하고 근로자에게 응급 처치 도구와 의료 지원을 제공합니다.
- 7) 산업 재해와 질병에 대한 예방, 관리, 추적, 보고 절차 및 시스템을 확립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근로자의 보고 장려, 상해질병 분류 및 기록, 필요 의료처치 제공, 사례 조사 및 원인 제거를 위한 시정 조치 시행, 업무복귀 지원 규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8)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 등 근로자에 대한 유해요소 및 노출도 등을 파악하고 평가하며 통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적절히 통제할 수 없을 경우, 근로자에게 적절한 개인 보호 장비 지급 및 교육 또는 보호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해야 합니다.
- 9) 생산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설비를 사용하는 데 있어 유해요소를 평가하고, 근로자들이 상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기계를 사용할 경우, 물리적 보호 장치, 및 방호벽을 제공하고 적절히 관리해야 합니다.
- 10) 근로자에게 깨끗한 화장실, 식수, 위생적인 식사 시설을 제공합니다. 적절한 비상구와 합당한 출입 권한을 통해 근로자 기숙사를 깨끗하고 안전하게 유지합니다.
- 11) 근로자들이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우려를 공개적으로 제기하도록 권장하고 보복에 대한 보호조치를 제공합니다.

2.2. 건강 및 안전 관리 시스템을 유지하여 근로자가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제한하고 작업 조건과 건강 및 안전 관리 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노력합니다.

3. 환경보호

공급업체는 환경 관련 현지 법령을 준수하고,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해 환경 오염 물질을 관리하고 최소화하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3.1. 모든 관련 국가, 지역, 공급업체의 환경 및 화학 법규를 포함하여 환경 요건 및 정책을 준수합니다.

- 1) 기업 운영에 요구되는 모든 환경 관련 인허가, 승인 및 등록을 취득, 유지, 관리하고 인허가 과정에 필요한 운영 및 보고 등의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3.2. 기후 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 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에 따라 기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탄소 중립을 위해 노력합니다.

- 1) 에코프로비엠이 요청하는 경우, Scope 1,2,3 배출량 및 물 사용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 2) 온실가스(GHG) 감축 목표, 실행계획 및 투명한 보고 메커니즘을 수립합니다.

3.3. 배출량 감소, 에너지 효율성 증가 및 재생 에너지 활용을 통해 제조 작업에서 지속적인 환경 개선을 달성합니다.

3.4. 환경 오염의 가능성이 있는 유해물질을 파악하고, 안전하게 취급, 이동, 사용, 재활용 또는 폐기될 수 있도록 관리하며, 특정 물질의 사용 및 취급을 금지 또는 규제하는 현지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3.5. 재활용 및 재생 가능 원료를 사용하고, 유해물질 사용을 줄이며, 공급업체와 협의 또는 승인된 원료 선택 및 제품 설계를 통해 공급업체 제품의 재활용 가능성을 개선합니다.

3.6. 공정상 생성되는 휘발성 유기 화합물, 미세먼지, 오존층 파괴물질 및 연소 부산물의 특성을 파악하여 상시 모니터링하고, 현지 법령에 따라 관리 및 처리한 뒤 배출해야 합니다. 또한 공급업체는 대기 오염방지 설비가 잘 작동하는지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합니다.

3.7. 체계적으로 폐수를 관리해야 하며, 불법 배출과 누수로 인해 폐수가 우수 관거 및 공공수역에 유입되지 않도록 합니다. 폐수의 관리 및 방출시에는 현지 법령에 따라 관리 및 처리한 뒤 배출해야 하며, 폐수 처리 시설이 잘 작동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합니다.

3.8. 환경 관리 및 개선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 지표를 모니터링하며 지속적인 개선 활동을 합니다.

4. 윤리경영

공급업체는 현지 법령을 준수하며, 정직하고 책임감 있게 높은 수준의 윤리 기준을 가지고 사업을 수행합니다.

4.1. 뇌물과 부패 없는 사업을 하며, 다음을 준수해야 합니다.

- 1) 모든 형태의 뇌물수수, 부패, 부당이득 및 횡령을 허용하지 않는 무관용 정책을 써야 합니다.
- 2) 모든 거래는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회계장부 및 업무 기록에 정확하게 반영되어야 합니다.
- 3) 공무원들과의 관계에서 부적절해 보일 수 있고 뇌물 우려가 발생할 수 있는 행동을 피하고, 주의를 기울입니다.
- 4) 뇌물 또는 부당한 이익을 목적으로 약속 또는 제안을 하거나, 수락해서는 안 됩니다. 사업기회의 획득 또는 제공, 제3자를 통한 금품 등의 약속, 제안, 수락 등도 모두 이에 해당됩니다.
- 5) 반부패 법령 준수를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을 해야 합니다.

4.2. 공급업체의 노무/안전보건/환경 관리 실태, 경영 활동, 지배구조, 재무 상태, 성과에 대한 정보는 해당 법령 및 일반적인 산업계 관행에 따라 공개되어야 합니다. 공급망 내 관련 분야 실태 및 관행에 대한 기록 위조나 부실표기는 용인될 수 없습니다.

4.3. 개인정보 및 지식재산을 보호하며, 다음을 준수합니다.

- 1) 공급업체, 고객사, 소비자 및 근로자를 비롯해 업무상 관련된 모든 사람의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관리하며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합니다.
- 2) 지식 재산권은 존중되어야 하고, 기술 및 노하우의 관리 및 이전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실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공급업체 및 에코프로비엠의 지식재산권 및 정보는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합니다.

4.4. 공정 거래, 광고 및 경쟁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4.5. 법적으로 금지된 경우를 제외하고 근로자가 내부고발을 할 수 있는 익명 신고 수단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임직원들에게 관련 절차를 공지하여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4.6. 제품 및 서비스가 제공되는 지역 또는 업체에 적용되는 모든 무역 통제와 경제적 제재 그리고 그와 관련된 법규와 정책을 준수합니다.

- 1) 제재 국가/지역/조직/개인 등과 직접 또는 간접적인 상업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 2) 제재, 수출 통제 및 보이콧 방지 요구 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적절한 실사를 수행합니다.

3) 적용 가능한 모든 통관 규정을 준수하고, 통관 활동과 관련한 모든 기록을 보존합니다.

4.7. 공급업체는 책임 있는 광물 조달 정책을 채택하고 제조된 제품에 포함된 탄탈럼, 주석, 텉스텐, 금 및 관련 광물의 출처 및 관리 체인에 대한 실사를 실시하여 다음을 합리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 1) “분쟁 및 고위험 지역 광물의 책임 있는 공급망을 위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실사 지침” 또는 이에 상응하는 인정된 실사 프레임워크와 일치하는 방식으로 조달됩니다.
- 2) 광물의 원산지, 제련소, 정련소 등을 포함한 모든 공급망에 대해 분쟁지역 광물 사용 여부를 추적해야 하며, 이를 통해 공급업체는 광물의 원산지를 증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3) 공급업체는 원료 공급망의 완전한 투명성과 이력관리를 위해 노력하며, 에코프로비엠의 요청 시 공급망 및 광물의 원산지 등에 대한 증빙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5. 관리 시스템

공급업체는 이 강령, 기업의 운영 및 제품과 관련된 법령 그리고 고객 요구 사항을 준수하며, 기업 경영 의사결정시 근로자의 인권, 안전, 보건, 환경 및 기업 윤리를 고려하는 경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 경영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포함해야 하며,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5.1. 준수 의지

경영진이 승인한 기업의 준수 의지 및 지속적인 개선 의지를 표명하는 내용의 사회적 및 환경 책임 정책 성명서를 현지 언어로 작성하여 게시해야 합니다.

5.2. 경영진의 의무와 책임

경영 시스템 및 관련 프로그램의 이행을 담당하는 책임자를 선정하며, 대표이사는 운영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 또는 보고 받아야 합니다.

5.3. 법령 및 고객 요구사항

이 강령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관련 법령 및 고객의 요구 사항을 파악하고 모니터링하여 이해하는 절차를 갖춰야 합니다.

5.4. 위험 평가 및 관리

기업의 사업 운영과 관련한 법령, 환경, 보건, 안전, 노동 관행 및 윤리 관련 위험성을 확인하고, 각 위험의 상대적 중요도를 파악하여 적절히 위험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을 실행합니다. 또한 위험 평가 및 관리 시스템이 적절히 작동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준수여부를 확인합니다.

5.5. 개선 목표 수립

사회적, 환경적 및 보건과 안전에 대한 성과 개선을 위한 목표, 대상, 실행 계획 그리고 목표 대비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문서화해야 합니다.

5.6. 교육

기업의 정책, 절차, 개선 목표를 실행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관리자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5.7. 의사소통

기업의 정책, 관행, 기대사항 및 성과에 대한 확실하고 정확한 정보를 근로자, 공급업체 및 고객과 소통할 수 있는 절차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5.8. 근로자 피드백, 참여 및 고충 처리

이 강령에서 다루는 조건에 대한 근로자의 의견을 취합하여 지속적인 개선을 지향하는 절차를 갖춰야 합니다. 근로자들은 보복의 두려움 없이 고충과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받아야 합니다.

5.9. 감사 및 평가

이 강령의 내용, 사회 및 환경 책임과 관련한 법령상 요건 및 계약상 에코프로비엠의 요구사항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자체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5.10. 시정 조치 절차

내/외부 평가 및 점검, 조사, 검토를 통해 확인된 미비사항을 적시에 시정하는 절차를 갖춰야 합니다.

5.11. 문서화 및 기록

문서, 기록의 유지/관리 및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법령을 준수하고 이 강령의 준수와 관련된 사항을 기록하고 문서화하여 유지합니다.

5.12. 공급업체 책임

이 강령의 요구 사항을 공급업체에 전달하고 공급업체가 이를 준수하는지 감시하는 절차를 갖춰야 합니다.

6. 행동강령 이행방법

공급업체는 이 강령을 준수하고, 문제를 방지, 개선 및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에코프로비엠이 요청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이 강령의 준수 여부를 입증해야 합니다. 공급업체가 이 강령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당사는 대체 공급업체를 찾을 수 있습니다.

6.1. 본 행동강령 준수를 위한 컴플라이언스 절차 등을 문서화하고, 다음을 준수합니다.

- 1) 이 강령의 감독, 관리, 시행 및 준수를 책임지는 고위 임원을 지정합니다.
- 2) 에코프로비엠이 요청하는 경우, 독립적인 제3자가 실시하는 설문조사, 현장 평가 또는 실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6.2. 발생 가능한 문제를 예방하고 완화하기 위해 인권과 지속가능성에 대해 실사를 실시합니다.

- 1) 외부 전문가, 관련 이해관계자 및 잠재적 영향을 받는 그룹과 상의하여 실제 또는 잠재적 영향을 파악하고 평가합니다.
- 2) 환경, 인권, 공중 보건, 원주민 및 그들이 운영하는 지역 사회를 고려하여 실사 결과를 사업 계획 및 의사 결정에 반영해야 합니다.
- 3) 지속 가능한 목표 설정, 정확한 결과 추적, 지속적인 진행 상황 평가 및 보고를 진행합니다.
- 4) 에코프로비엠과 관련된 사회 및 환경 문제에 대해 당사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적시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5) 필요에 따라 이 행동강령의 준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제3자의 도움을 구합니다.

6.3. 제품 안전에 관한 오작동이나 우려 사항을 공급업체와 공유합니다.

참고자료

국제적인 Framework 및 현장, 산업가이드

- UN 세계 인권 선언 (1948)
- 경제적 ·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966)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966)
- 기후 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 협약 (1992)
- 국제노동기구(ILO) 노동기본원칙 및 권리선언 (1998)
- UN 사업과 인권에 관한 지침 원칙 (2011)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2011년판)
- 분쟁지역 및 고위험지역 광물의 책임 있는 공급망에 대한 OECD 지침 (2016년판)
- UN 여성 권한 부여 원칙 (2010)
- RBA행동강령 (버전 7.0)

■ 개정이력

개정번호	제/개정일자	개정내용
0	2023.08.31	최초 제정

■ 유관표준